

의안 번호	2140	<b>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5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8. 25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9. 8.(금)

## 2. 제안이유

-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재충전과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강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후생복지사업의 명문화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(안 제7조)
- 나.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수 현행화(안 제9조)

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재충전과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근 거 법 규

##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